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공공 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은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자의 무상사용·수익 권한을 일정기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기부채납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를 10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 맹형규

●법률 제1034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중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를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 가. 이 법률의 적용 배제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추가함(법 제3조제10호 신설).
- 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법 제7조제2항 본문).
- 다. 등록청은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도록 함(법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 라. 기부금품의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법 제1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제16조제2항제4호 삭제).

<법제처 제공>

제1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부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한 모집자부터 적용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등록청은 모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이바지하는 한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국장학재단이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 활동을 통해 인재육성 등 재단고유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